#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

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? 과세관청의 위법·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

## 1. 처리업무

- ❍ 처분이 완료된 위법·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고충민원
- ❍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법령위반이나 재량권남용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민원
- ❍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

## 2. 제외대상

- ❍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기간 미경과, 진행중, 완료된 사항
- ❍ 감사결과 처분 사항, 지방세 관련 고소·고발 사항
- ❍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

## 3. 처리절차

- ❍ 고충민원
  -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(고충민원신청서)
  -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(1회 연장 가능)
- ❍ 권리보호요청
  -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(권리보호요청서)
  -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(1회 연장 가능)
- ❍ 세무조사 기간연장·연기
  -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(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),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(세무조사 연기 신청서)
  -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

## 4. 이용방법

- ❍ 방　　문: 익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규제계 익산시 납세자보호관
- ❍ 우　　편: 우)54622 익산시 인북로 32길 1 익산시청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
- ❍ 문　　의: 전화 063-859-5716 / 팩스 063-859-5053
  e-mai d3195@korea.kr